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32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4조, 「우편대체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우체국예금과 우편대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우체국예금 및 우편대체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1조(우체국예금에 관한 수수료) 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통장을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수수료
분실	2,000원
오손	2,000원
무여백	무료

②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예금자 외의 자가 예금자의 요구불예금계좌에 가입국 외의 체신관서에서 예입하는 경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수수료(건당)
10만원 이하	800원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0원
100만원 초과	2,000원

제2조(우편대체에 관한 수수료) ① 우편대체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에 따른 우편대체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수수료		비 고
납입	일반계좌	10만원이하	건당 800원	가입국 또는 가입자 본인 납입은 면제
		100만원이하	건당 1,000원	
		100만원초과	건당 2,000원	
	특별계좌	무료		
이체		일반이체	무료	
		자동이체	별도약정	
수표추심	당지	면제		자기앞수표는 면제
	타지	10만원이하	장당 1,500원	
		100만원이하	장당 3,000원	
		100만원초과	장당 5,000원	
양도 및 승계		건당 300원		
우편대체수표 용지		책당 10,000원		

제3조(기타 수수료) 제1조, 제2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우체국 창구 또는 우체국예금·보험홈페이지(<http://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